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22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염태영·정준호·이해식
이연희·박지원·김우영
황명선·김준혁·최혁진
이용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실질적인 범정부적 조정·추진력이 미흡하고, 환경부 중심의 합동추진체계만으로는 부처 간 이해충돌 극복과 기타 핵심 부처의 정책 이행력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있어 범정부적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원활한”을 “위원회와 환경부장관은 원활한”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원활한”을 “위원회와 환경부장관은 원활한”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대응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를 “국가기후대응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의결하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을 “국가기후대응위원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명을”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와”를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기본방향에”를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점검에”를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의2.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

제22조 제목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대응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③ (생략)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u>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 ----- <u>국가기후대응위원회</u> -----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u>원활한</u>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 ----- ----- <u>위원회와 환경부장관은 원활한</u> ----- ----- ----- ----- ----- ----- ----- -----.

⑦ (생 략)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
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
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원회와 환경부
장관은 원활한-----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기후대
응위원회-----

-----.

⑤ ~ ⑦ (생략)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 ⑨ (생략)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장 국가기후대응위원회 등

제15조(국가기후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국가기후대응위원회를-----.

②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

③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

1. -----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

<u><신 설></u> 2. · 3. (생 략)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u>점검</u>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u><신 설></u> 8. ~ 14. (생 략)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u>정에</u>----- <u>1의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2. · 3. (현행과 같음) 4. -----<u>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u> ----- 5.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u> 8. ~ 14. (현행과 같음) 제22조(<u>지방기후대응위원회의</u>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 ----- -----<u>지방기후대응위원회</u>----- -----.
---	---